

자료 II / 외국판례

외국의 언론관계 판례

본 연구자료는 선진외국의 언론관계판례들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언론법제 연구에 관한 자료제공과 한국언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판례 1

공적인 논쟁사항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보도한 기사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
Greenbelt Cooperative Publishing Association v. Bresler
메릴랜드주 대법원에 대한 사건이송 명령

<사실개요>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군 순회법원은 배심 평결에 의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상고하였다. 메릴랜드주 대법원(253Md. 324, 254A. 2d755)은 1 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신문사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시 당국에서 피상고인이 소유한 땅을 분할 받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토지분할에 얽힌 불화를 해결하고자 협상에 임한 공적 인물인 피상고인의 태도를 두고 「공갈행위」(blackmail)라는 한어를 사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규정을 적용해서 볼 때, 그것이 시 의회의 열띤 공개석상에서 나온 말일 때에는 중상비방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또한 신문기사에서 표현된 것일 때에도 공적인 논쟁사항을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요지>

스튜어트 대법원판사가 법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상고인들은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시에서 「그린벨트 뉴스 리뷰」라는 소규모 주간지를 발행하는 자들이다. 피상고인 브레슬러는 그린벨트시의 저명한 지방 부동산 개발업자 겸 건축업자이며, 문제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인접 군으로부터 이주하여 주 입법기관의 하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965년 가을 브레슬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고밀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그린벨트시 의회와 교섭을 하게 되었는데, 한편 시에서는 신설 고등학교의 건축을 위하여 브레슬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넓은 지역의 땅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만일 브레슬러와 시 당국 사이에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부지의 보상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었고, 동시적인 교섭은 명백히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거래상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 공동교섭은 상당한 지역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몇 차례 시의회의 회의가 열려 다수의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였다. 이 회의 내용은 「그린벨트 뉴스 리뷰」지의 뉴스 칼럼에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그 신문 주간판의 연속되는 두 주간의 신문기사에서는, 공개된 회의에서 몇 사람이 교섭에 임하는 브레슬러의 태도를 「공갈 행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표현은 인용부호와 함께 하거나 그대로 수 차례 등장하였으며, 한번은 읽을 거리 기사란에 소제목으로 사용된 바 있었다.

브레슬러는 이러한 신문기사에 대하여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반격하였다. 청구 원인의 주된 요지는, 문제의 신문기사 그 자체와 상고인 신문의 다른 기사들이 자신에게 공갈범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점이다. 본건은 심리된 후배심에서 브레슬러에게 5천 달러의 보상적 손해와 1만2천 달러의 징벌적 손해가 재정되었다.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인하였다(253Md.324, 252A.2d755). 우리는 주장된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송명령신청을 허가하였다(396U.S.874, 90.Ct.154, 24L.

Ed.2d133).

[1] 우리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 (376 U.S. 254, 845. Ct. 710, 11L. Ed2d686)에서 출판물에 의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악의’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 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쓰여진 것이 증명되어야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의 입장임을 선언하였다(Id, at 279, 280, 84S. Ct. at 726).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388U.S.130,87S.Ct1975,18L.Ed.2d1094)에서는 우리는 「공적(공적) 인사」에 의하여 제소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헌법적 제한문제를 다루었다.

[2] 본건에서 브레슬러의 변호사가 그의 모두 진술에서, 배심에게 브레슬러는 지역사회에서 공적 인사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정은 명백히 정당하다. 브레슬러는 그린벨트시의 미래를 위한 개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과거에 그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시와 협의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원래의 시 계획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형태의 주택단위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 받기 위한 길을 모색 중이었다. 동시에 시에서도 학교 건축을 위하여 브레슬러가 소유하고 있는 넓은 지역의 땅을 얻고자 노력 중이었다. 공중의 큰 관심사인 이 교섭이 학교 임원진과 시 의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브레슬러의 지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적 인사」에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다[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 (154-155, 85S. Ct. 1991-1992 <하알란 대법원관사의 의견>) 아울러 Pauling v. Globe-Democrat Publishing Co. 사건 판결 (8Ci-r., 362F. 2d188, 195-196, 이송명령신청 기각, 388 U.S. 909, 875Ct. 2097, 18L. Ed. 2d1347 참조).

[3] 다른 군을 대표하는 주의원으로서나 다른 이유에서 브레슬러가 New York Times 사건판결이 의미하는 「공적 인사」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다[Time Inc. v. Hill 사건 판결(385 U.S. 374, 390, 87S. Ct534, 543, 17L. Ed. 2d454), Rosenblatt v. Baer 사건 판결(383 U.S. 75, 86 n.2, 86S. Ct. 669, 676, 15L. Ed. 2d597)과 비교할 것]. 왜냐하면 본건에서 배심에서 실시한 내용은 브레슬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헌법적으로 용납되지 아니하는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심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률에 대한 설명에서 심리판사는, 만일 상고인 신문의 기사가 악의 또는 그 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브레슬러에게 손해배상이 허용된다고 되풀이하여 실시하였다. 그 판사는, 「악의」가 「 좋지 않은 감정, 적대의식, 위해를 가하려는 면밀한 기도」를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더욱 그 판사는 배심에서 「악의」란 기사 자체의 표현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배심은 단순한 허위와 일반적인 적대의식의 배합이라는 기준 하에서 책임을 인정하도록 허용된 것이다.

[4]이러한 것은 우리들 판결에서 명백히 하고 있듯, 헌법적 중대성에 대한 오류이다.

「이러한 악의에 대한 정의는 공적문제에 관한 한 헌법적으로 불충분하다;’우리는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에서 공직자는 문제된 표현이 허위이고 이를 알면서 고의로 작성한 것이거나,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Rosenblatt v. Baer 사건 판결(at 84, 86S. Ct. at 675)]. 「설사 표현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헌법의 대원칙은 고의적이거나 맹목적인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표현에 대하여건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것을 배제한다. 공공연한 쟁점에 대한 토론은, 만약 말하는 사람이 미워서 말하였다는 것이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아야 한다면 제약이 없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Carrison v. Louisiana 사건 판결(379 U.S. 64, 73, 85S. Ct. 209, 215, 13L. Ed. 2d125). 아울러 Beckley Newspapers Corp. v. Hanks 사건 판결(389 U.S. 81, 82, 88S. Ct. 197, 198, 19L. Ed. 2d248)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인 금지는 원고가 「공직자」로 취급되건 「공적 인사」로 취급되건 전혀 차이가 없다(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

[5] 따라서 배심에 대한 잘못된 실시 그 자체만으로 판결을 파기하기에 충분하다. 왜냐하면 「배심의 일반평결 자체의 입장에서」 배심이 허용된 근거에서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 허용되지 아니한 근거에서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 「분간하기 불가능하다면 판결은 파기되어 환송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 U.S. at 284, 84S. Ct. at 728); Time, Inc. v. Hill 사건 판결 (385 U.S. at 394-397, 87S. Ct at 545-547); Rosenblatt v. Baer 사건 판결(383 U.S. at 82, 86S. Ct. at 674); Stromberg v. California 사건 판결(283 U.S. 359, 367-368, 51S. Ct. 532, 535, 75L. Ed. 1117) 참조).

[6,7]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에서 주목하였듯이 「이 법원의 임무는 헌법적인 원리가 복잡해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와 아울러 적절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헌법적으로 적용되어왔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거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는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영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한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 전체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376 U.S., a 285, 84S. Ct. at 728).

[8] 본건은, 지방정부적 차원의 이해와 중요성을 지닌 문제와 관련되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개된 회의에 대한 신문보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신문보도의 바로 그 주제는 특별한 수정헌법 제 1 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정치적 토론에 대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시스템의 기본이다」 [Stromberg v. California 사건 판결(283 U.S. at 369, 51S. Ct. at 536)]. 만일 정치 토론의 자유가 이 나라에서 그것의 역사적 기능을 완수하고자 한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의 생존기간 동안의 절박한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정보에 대한 쟁점을 받아들여야 한다[Thornhill v. Alabama 사건 판결(316 U.S. 88, 102, 60S. Ct. 736, 744, 84L. Ed. 1093)]. 비난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의 위협이나 현실적인 부과는, 이 수정헌법 제 1 조의 자유의 제한 없는 행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 헌법은 그러한 책임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엄격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상고인 신문사의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당시 시 의회의 공개청문회에서 말하여진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한 것임에 대하여는 다툼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상고인들이 「책임 있는 출판업자들에 의해 흔히 고립되는 조사 및 보도의 기준에서 벗어난 어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388 U.S. at 155, 87S. Ct. at 1991; 하알란 대법원판사의 의견) 또한 허위인줄 알면서 고의로 보도하였다거나,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 (376 U.S. at 280, 84S. Ct. at 724)].

[9] 피상고인의 주장은, 오히려 회의에서 발언자들이 「공갈행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브레슬러에게 공갈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상고인들은 브레슬러가 그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니, 이와 같은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보도한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있는 것이다. 본건이 배심에 회부된 것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메릴랜드 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도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 하겠다(253Md. 324, 360-364, 252A. 2d755, 775-778). 우리는 다음에서 말하는 이유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즉 헌법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상황 아래서의 「공갈행위」라는 말이 말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린벨트 뉴스 리뷰」지에 보도되었을 때에는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브레슬러와 시 사이의 교섭에 관한 시 의회 회기에서의 공개토론은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모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흔히 그러하듯 논쟁 그 자체가 가열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브레슬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브레슬러가 시 공무원들과 협상하면서 취한 태도를 「공갈행위」라고 특징 지운 것이다. 「그린벨트 뉴스 리뷰」지는 이러한 공개적인 토론을 뉴스 칼럼에 충분히 보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문으로서의 완전히 합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만일 공적인 회의에서 사용된 「공갈행위」라는 말을 문맥에서 빼내버려 보도내용이 삭제되거나 왜곡이 된다면 이는 별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보도내용은 정확하고 완전하였다. 보도기사의 소제목 『학교 부지가 시 의회를 흥분케 하다-도시계획의 조정을 위한 거래가 논쟁을 자초하다』와 『시 의회, 학교부지에 대한 거래를 4 대 1로 부결하다』 등은 신문이 토지에 대하여 진행중인 교섭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뚜렷이 전해주는 것이다. 브레슬러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회의석상에서 공갈행위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브레슬러의 태도가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는 상세한 내용과 함께 모든 기사에서 브레슬러의 제안을 정확하고도 충분히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각 기사내용에 실린 「공갈행위」라는 단어를 본 독자들이,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브레슬러의 공적이면서도 합법적인 교섭상의 제안이다. 어느 독자도 시 의회 회의에서의 발언자나 그들의 말을 보도한 신문기사가 브레슬러에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경솔한 독자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말은 브레슬러의 교섭에 임하는 태도를 극도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사용된 수사상의 과장, 모멸에 찬 격렬한 말투였음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기록을 보더라도 그린벨트시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 누구도 브레슬러가 범죄를 저질러 비난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상고인들에게 이러한 두 신문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수정헌법 제 1 조 및 제 14 조가 보호하는 신문의 자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뒤집어버리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송명령이 허가된 메릴랜드주 대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법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메릴랜드주 대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와 같이 판결한다.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화이트 대법원판사의 동조 의견>

본인은 배심에게 실시한 내용에 들어있는 악의에 대한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견에 동조하고자 한다.

피상고인 브레슬러는 상고인 회사의 신문에 실린 적어도 네 가지 표현에 의하여 명예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 칼럼의 소제목 『공갈행위』라는 말을 사용함과 더불어 브레슬러의 행동은 「공갈행위의 경미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표현 (2) 브레슬러가 「비윤리적인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비난 (3) 다른 사람들이 브레슬러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인, 「야바위」 혐의가 있다는 주장 (4) 브레슬러가 「군

기준에 맞도록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피고」로 제소되고 있다는 표현 등이다. 이에 대해 상고인은 공갈행위라는 말을 형사적인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명예훼손적인 용어도 아니며, 악의로 다시 말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신문에 게재했던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심리법원에서는 배심에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범죄, 불명예, 부정직,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사회의 상당 다수의 사람들 마음 속에 심어주거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신용에 해가 되는 말이나 그림 또는 상징을 심는 것을 말한다.

실린 내용이 자신에게 범죄, 불명예, 부정직, 비도덕적인 행위를 뒤집어 씌우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신용에 해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의 우월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사용된 공갈행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법원은 배심에게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거나, 증거가 문제의 쟁점에 대하여 팽팽하게 양분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피고를 위하여 평결하여야 합니다.

문제된 보도내용을 고찰함에 있어 여러분은 그 보도내용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보도 내용이 의미하는 바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과 정황 그리고 전체의 문맥에 따라 독자가 이해하게 될 바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도내용이 한편으로는 명예훼손에 관계되고 한편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보도내용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이 그 보도내용에 귀속시켰으리라 생각되는 의미를 둘 가운데서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제출이 허용된 모든 증거와 보도내용을 둘러싼 모든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Id., at E.189-190).」

법원은 공갈죄에 대하여도 정의하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 신문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배심에게 설명했다.

상고인들은, 비록 증거조사절차를 생략한 청구기각판결이나 심리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배심에게 사실을 답변하지 않은 것은 피고들이 문제된 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의 의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할 뿐이라고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앞서 배심에게 언급한 실시 내용의 어느 것에도 예외를 달지 아니하였다(App. E. 10-11 참조).

배심은 원고 승소의 평결을 하였고,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액의 재정에 들어간다.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이를 승인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이 촉구하는 연방헌법상의 보호를 제쳐놓고 배심의 평결과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후속판결을 지지하였다. 공갈에 대한 법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서 ‘공갈행위’라는 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갈행위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1965 년 10 월 14 일자의 뉴스 리뷰에서 실렸으며, 다시 10 월 27 일자신문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상고인은 ‘공갈행위’라는 말이 비형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나 의도된 취지는 배심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American Stores., Co. v. Byrd 사건판결 (229Md. 5, 181A. 2d333)]. 배심은 상고인에게 불리한 평결을 하였다.

배심은 브레슬러가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에서 공갈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비난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다른 내용의 보도기사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브레슬러가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보도내용 이외에도 그가 ‘비윤리적인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거나, 야바위 혐의가 있다거나, ‘군 기준에 맞도록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피고’로 제소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공사도급업자인 브레슬러의 영업에 해가 되는 것이거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적인 것이다(Id. At 354, 252A. 2d, at 772).」

악의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도 대법원은, 신문사가 공갈행위라고 한 비난이 형법적인 의미에서는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야바위」라는 비난에 대하여 법원은, 신문이 그 말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정보원을 인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그것은 신문사가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야바위’라는 말은 브레슬러 측의 부정직한 행동을 지적하고, 브레슬러를 웃음거리와 모욕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거의 의심이 없다. 배심은 청문회에 대한 보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보도가 허위임을 알면서, 또 진실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사화한 것이라고 적절히 결론 내린 것이다(Id., at 360, 252A, 2d. at 775).」

법원도 역시, 주택소유자들이 브레슬러를 상대로 그가 지은 집에 대한 공정상의 하자를 들어 소송을 개시하였다는 보도도 사실에 대한 부주의하게 무시한 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메릴랜드 주 상고심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서 당 법원은 공갈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이나 또는 어느 개인을 비형사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인 성격이나 신용에 해를 주는」 품위에 어그러진 의미의, 「공갈행위」라고 혈똥는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또한 당 법원은 배심에게 그들이 어떤 말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이해되는지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배심이 문제된 말에서 형사적인 의미를 이끌어 냈다는 메릴랜드 주 대법원판결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당 법원이 냉정한 기록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심리판사나 배심, 주 대법원 모두 「일반독자들」이 형사적 범죄행위로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아주 잘못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결론이, 공갈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반독자들에게 범죄적 행동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판결을 지지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문제된 말이 통상적인 용법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되는, 바로 그 사실이 어느 정도 증거가 된다. 메릴랜드 주 대법원의 배심의 평결에 대한 해석을 뒤엎지는 않으나 메릴랜드 주 그린벨트시의 일반독자들이 「공갈행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높은 통찰력을 가지는 다수의 주장에는 가담할 수 없다.

당 법원이 그와 같이 판시하는 바는 아니나, 만일 신문이 범죄행위라고 비난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그와 같은 비난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선의와, 맹목적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신문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점은 논의될 만하다.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 U.S. 254, 84S. Ct. 710, 11L. Ed. 2d686(1964))의 법원리가 명예훼손적인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 말을 구사함으로써 입게 된 명예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출판업자가 선의의 뜻에서 사용하였다고 선의로 주장을 하면, 언제나 책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인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은 신문이 보도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나, 수정헌법 제 1 조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정체인 것이다. 사후에 허위로 판명된 「사실」의 부주의하지 않은 보도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다면, 합법적인 보도와 의견교환은 억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전달자들이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하거나, 한 면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뒤집어씌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말들이 일반독자들의 눈에 논평되어지는 대상에 심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호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자기검열의 동일한 위험을 내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본인은 숙련된 직업종사자들이 그들 직업상의 기준을 고수하지 못하고, 그들 출판물의 일반독자들로부터 오해 받는 위험을 떠맡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만일 수정헌법 제 1 조가 공개된 모임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발언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매체에 대하여 보다 많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보도에 대하여 보다 광범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은 악의에 대한 설시에 잘못이 있다는 법원의 의견에는 동조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잘못은 본인이 언급 한 바와 같이 본건의 「공갈」적 측면에는 무관하다. 만일 배심이, 공갈범죄로 비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면 「악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들은 그러한 비난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심은 일반평결을 하고 있다. 아마도 배심은 공갈행위라는 말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니나, 신문에 게재된 다른 해로운 표현들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 인정하였던 것 같다. 실제로 공갈행위라는 보도내용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울 이유가 거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면, 이것이 배심들이 취할 가장 가능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전제하에서 설시의 잘못은 우리에게 판결의 파기를 요구하고 있다[Stromberg v. California 사건 판결(283. U.S. 359, 51S. Ct. 532, 75L. Ed. 1117,(1931))].

더글러스 대법원판사의 동조를 받고 있는 블랙 대법원판사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 U.S. 254, 293, 84S. Ct. 710, 733, 11L. Ed. 2d686(1964)]에서의 자신의 동조의견,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388U.S. 130, 170, 87S. Ct. 1975, 1999, 18L. Ed. 2d1094(1967)]의 일부 동조 일부 반대의견, Garrison v. Louisiana 사건 판결 [379 U.S. 64, 80, 85S. Ct. 209, 218, 13L. Ed. 2d125(1964)]에서의 더글러스 대법원판사의 동조의견에 기술된 이유로서 법원의 판결에 동조하고 있다.

상고인이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피상고인의 주장은 무시적인 태도로서 실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어

Beckley Newspaper Corp. v. Hanks

웨스트 버지니아 주 와이오밍 군 순회 재판소에 대한 사건이송 명령

<사실개요>

웨스트 버지니아 주 와이오밍 군 순회법원은 서기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 대법원은 신문사의 상고신청을 불허하였다. 이송명령이 허가되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수도공급시 불소처리에 반대하는 서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로서, 「서기의 세찬 위협이 군 보건위원회 의장을 겁먹게 할만 하였다」고 한 보도를 신문사가 사전에 조사한 바 없이 허위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게재했느냐는 점에 대해 배심에게 제공한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판사 전원일치 판결

이송명령신청이 허가되다.

피상고인 행크스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 랠리 군의 형사 및 순회법원의 서기이다. 행크스는 그의 재선 캠페인 동안 상고인 조간신문이 그의 공직자로서의 행동을 격렬히 비판한 내용이 세 가지 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 당하였음을 이유로 웨스트 버지니아 주 와이오밍 군 순회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배심은 피상고인 승소평결을 하였으며, 손해배상금은 5 천 달러를 재정하였다. 주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판결요지>

본건 소송은, 이 법원에서 이미 선고한 바 있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 U.S. 254, 84S. Ct710, 11L. Ed. 2d684(1964)], 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사건 판결[379 U.S. 64, 85S. Ct. 209, 13L. Ed. 2d125(1964)], Henry v. Collins 사건 판결[380 U.S. 356, 85S. Ct. 992, 13L. Ed. 2d88(1965)] 및 Rosenblatt v. Baer 사건 판결[383 U.S. 75, 86S. Ct. 69, 15L. Ed. 2d597(1966)]에 뒤이어 심리되었으며, 심리도중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원리를 적용 가능한 법리라고 인정하였으면서도 명백히 허용되어서는 안될 배심지도에 의하여 배심에 회부된 것이다. 배심들은 일부분의 설시 내용에서 만일 상고인이 「옳지 못하거나 타락한 동기 아래」 또는 「원고에게 위해를 주기 위한 악의, 나쁜 의도나 욕구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피상고인 승소의 평결이 가능하다고 설명 받았다. 피상고인은 심리과정에서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에 대한 그와 같은 잘못된 해석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상 적절하지 못한 배심심지도가 이루어진 탓으로 이 배심지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심의 평결은 법을 잘못 해석한 설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상고인은 증거의 충분성을 적절히 문제삼고 있으므로, 우리는 「판결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금지된 불법한 침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을 전체로서 독립적으로 심사하게 되었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376 U.S., at 285, 84S. Ct., at 729),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388 U.S. 130, 156-159, 87S. Ct. 1975, 1992-1993, 18L. Ed. 2d1094(1967))(하알란 대법원판사의 의견):같은 판결 at 168-170: 87S. Ct. 1998-1999(대법원장의 의견) 참조].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에서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행동과 관련되는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 내용은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로」,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또는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376 U.S., at 279-280, 84S. Ct., at 726). 본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는 「제출된 증거로서는 현실적인 악의의 점에 대하여 헌법적 기준을 충족할 만한 설득력 있는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376 U.S., at 285-286, 84SCt., at 728).

우리는 명예훼손적인 보도로 주장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상고인은 상고인이 보도내용을 허위인 것으로 알면서 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피상고인의 주장하는 바는 상고인의 보도내용이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실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배심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에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찾아낸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는, 피상고인과 또 다른 공직자인 군보건위원회 의장인 엘리노어 허트 여사의 지방 수도공급시 불소처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기사에 관계되고 있다. 그 보도내용은 『불소처리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제목 아래 주로 허트 여사와의 의견대립을 겨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허트 여사는 행크스의 선례를 따르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전에 자신의 이름이 비클리 포스트 헤랄드 신문에 다시는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화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행크스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애매모호한 위협조였는데, 그 위협은 쉽게 겁을 먹는 겁쟁이들이나 놀라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우리가 도달한 유일한 결론은 행크스나 허트 여사가 수 십 년간 그들이 논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여움으로 가득 찬 함성들이 불소처리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한패가 되어 신나는 결과로 매진하고 있다거나, 또는 행크스의 세찬 위협이 허트 여사를 겁먹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피상고인의 주장하는 바는 자신이 협박하였거나 허트 여사가 겁낸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상고인 신문사의 사장 겸 대표이사의 반대신문에서의 다음과 같은 증언내용은 「공격적인 비난」이 진실여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실었다는 점에 대한 사전조사의 결여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문: 그러나 당신은 배심에게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행크스를 공격하기 전에 특별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가요.

답: 우리는 공무원들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크스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 이 보도내용들은 행크스가 허트 여사를 협박하는지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 그럴 가능성이라고요?

답: 맞습니다. 그들은 「아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 그 보도내용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상고인의 주장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인신문의 일절이나 기록상의 어떤 내용도 「New York Times 사건 판결이 요구하는 허위의 개연성에 대한 고단위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지 못한다[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사건 판결(379 U.S. 64, 74, 85S .Ct. 209, 216, 13L .Ed.(25))]. 본건 기록에서 상고인이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된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맹목적으로 무시적인 태도로서 실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U. Sat 287-288, 84S. Ct.,729-730), Time, Inc.v. Hills 사건 판결(385 U.S. 374, 388-389, 87S. Ct. 534, 542-543, 17L. Ed. 2d456(1967)) 아울러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사건 판결(388 U.S., at 153-154, 37S. Ct .at 1990-1991)(하알란 대법원 판사의 의견) 참조].

이 판결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심리를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웨스트 버지니아 주 와이오밍 군 순회재판소로 환송한다.

이와 같이 결정한다.

파기 환송.

블랙 대법원판사와 이에 동조하는 더글러스 대법원판사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판결(376 U.S. 254, 293, 84S. Ct. 710, 733, 11L. Ed686) 및 Garrison v. State of Louisiana 사건 판결(379 U.S. 64, 79, 85S. Ct. 209, 218, 13L. Ed. 2d125)에서 개진한 동조 의견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결론에 동의하고 있다.

포타스 대법원판사는 본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에 간여하지 않았다.